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704
----------	-------

발의연월일 : 2025. 11. 28.

발 의 자 : 조계원 · 김우영 · 민형배
박지혜 · 복기왕 · 안도걸
안호영 · 이개호 · 이광희
이성윤 · 최혁진 · 홍기원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3조), 수사기관은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제7조).

다만, 수사 · 재판 · 형집행 과정에서 가해자의 신분 변화, 재판 일정, 교정시설 출소 등 범죄피해자의 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중요 변동 사항에 관한 통지 제도가 피해자 보호에 대하여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가해자의 출소 사실 등을 뒤늦게 인지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국가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피의자 · 피고인의 구속 · 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 범죄피해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상

황을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와 신변 안전을 실효적으로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의2).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공”을 “제공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로 한다.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피해자가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2. 공판의 일시·장소
3. 재판 결과
4.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5.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① (생략) <u><신 설></u>	제8조의2(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① (현행과 같음) <u>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피해자가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1.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u> <u>2. 공판의 일시 · 장소</u> <u>3. 재판 결과</u> <u>4. 피의자 · 피고인의 구속 · 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u> <u>5.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u>제공</u> 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③ ----- <u>제공 및 제2항에 따른 통지</u> -----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